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97호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7일

중소기업청장

##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참여 단체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11846호)됨에 따라,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연합회규약·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(단체) 요건에 법률 개정 내용\*을 반영(제2조제2항)

\*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단체 요건 : 회원의 90%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함

나. 소상공인연합회의 규약·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는  
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(제3조제2항)

### 3. 의견제출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·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- 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
(전화 : 042-481-4576, Fax : 042-472-6958)

**< 신·구 조문 대비표 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조합 및 단체로서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·조합 및 단체로 한다.</p> <p>1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.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조합 및 단체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2조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로 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조합 및 단체일 것</p> <p>가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</p> <p>나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조합 및 단체</p> <p>2. 법 제10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</p> <p>3.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	<p>제3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</p>